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9호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2022년 핼로윈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으나, 현행 법령은 주최·주관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

○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
----------	-----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의 원 : 정순욱 · 김경희 · 김상현 · 박강우 · 백승규
심영석 · 오은옥 · 이우완 · 이원주 · 이천수
진형익 · 최은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2022년 핼로윈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과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으나, 현행 법령은 주최·주관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

○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1,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장소 등 다중운집 행사 내용
2.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행사 장소의 인원 수용 능력
3.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다중운집 행사의 접근 경로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5.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의 비상시 교통계획
8.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 통제 계획
9.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각종 조건
10.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창원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2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심의·해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단체를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